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0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금고지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변경함(안 제6조)
- 나.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)
- 다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BIS자기자본비율 및 원화유동성비율을 총자본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변경함 (안 별표)
- 라. 「법령 입안심사 기준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정비 (안 제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8년 3월 14일 ~ 4월 3일(2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관련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덧붙임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세정과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금고(이하 “금고” 라 한다)” 를 “시금고” 로,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를 “하남시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 “금고” ” 를 “ “시금고” (이하 “금고” 라 한다)” 로, “시” 를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, 부위원장 1인 등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” 를 “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임명하는 사람으로” 를 “임명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” 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협력사업비)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며, 그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징수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징수과장 이광범
	팀장 직위·성명	세입관리팀장 이서구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서구 (790-539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일반회계·특별회계·기금의 <u>시금고(이하“금고“라 한다)</u>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하남시(이하“시“라 한다)</u> 재정관리의 안정성,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시금고</u> ----- ----- <u>하남시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<u>금고</u>“라 함은 <u>시의</u> 소관 현금과 시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“<u>시금고</u>“(이하“<u>금고</u>“라 한다) ----- <u>하남시(이하“시“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등 <u>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9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<u>임명하는 사람으로</u> 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<u>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임명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</u>이 되도록 하여야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5조(협력사업비)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,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하며, 그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[별표 1]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31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(10)
	- 국외평가기관 - 국내평가기관	(6) (4)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1)
	- 총자본비율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 - 자기자본이익율 - 유동성커버리지비율	(7) (7) (6) (1)
	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	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18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5)
	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	(4)
	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예금금리	(3)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소 계	20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(5)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(7)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8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2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7)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	(7)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3)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소 계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*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(5) (4)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지방회계법

제38조 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7.26 제14839호(정부조직법)]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지방회계법시행령

제48조 (금고 업무의 약정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
2. 주민의 이용 편의
3. 금융기관의 재무구조

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”란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
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개정 2017.7.26 제28211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
1.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

2.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

3.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[개정 2017.7.26 제28211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
■ 지방재정법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참고사항

[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
(2015.12.24. 개정)]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

행정자치부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1. 총 칙

① 목 적

-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자치단체”라 한다.)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

② 용어의 정의

① 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.)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

② 일반회계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

③ 특별회계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)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

④ 기금(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)

-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『지방자치법』

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함

⑤ 금고지정

-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

⑥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

③ 적용범위

-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④ 금고의 수

-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·운용하여야 하며,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

⑤ 금고의 약정기간

-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
-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

2. 금고지정 방법

① 개념

-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(隨意)방법이 있으며,
 -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·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
 -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

② 금고지정 방법

-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
 - 가.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 - 나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 - 다.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(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)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

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

-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 표>의 기준으로 평가함
 - 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0)
 - 나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
 - 다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8)
 - 라. 금고업무 관리능력(19)
 - 마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(9)
 - 바. 기타사항 -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(9)
- <별 표>의 기준 중 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 - 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(예시① 참조)
 - 나.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9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(예시③ 참조)
 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
 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,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- <별표>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(규칙)으로 정하여야 함

- 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.(예시② 참조)
- 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.(예시② 참조)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), 항목 5(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)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을 적용함.

(예시①) 항목 6을 정하는 경우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
6. 기타사항(9)	6. 기타사항(9) - 항목 가. 000(5) 나. 000(4) - 세부항목

(예시②)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(순위간 점수편차 10% 적용시, 항목2는 5%적용)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(예시)
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) 나. 주요경영지표 현황 - 총자본비율(안전성, 7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, 7점) 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, 6점) 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	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) (1순위 6.0점, 2순위 5.4점, 최저순위 3.6점) 나. 주요경영지표 현황 - 총자본비율(안전성, 7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, 7점) 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, 6점) 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(1순위 6.0점, 2순위 5.7점, 최저순위 3.6점)

(예시③) 항목 6(자치단체 자율항목)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

지 칩	조례 또는 규칙안(예시)
<p>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0) - 총자본비율(7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(7) - 자기자본이익율(6)</p> <p>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내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</p>	<p>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1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) - 총자본비율(7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으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(7) - 자기자본이익율(6) - <u>유동성커버리지비율</u>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(1) - 항목추가</p> <p>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내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*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</p>
<p>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점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급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</p>	<p>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8점) 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급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) - 항목추가 ※ 추가배점 불가</p>
<p>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8점) 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6)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7)</p>	<p>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20점) 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7) - 추가배점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) - 추가배점</p>
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(19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7)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</p>	<p>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2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7) *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) - 항목추가</p>
<p>5.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(9점) 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(5점) 나.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(4점) *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</p>	<p>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(9점) 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 나.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(4점) *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 ※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</p>

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

- 지역실정,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

③ 『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』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

-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

-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(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)
 - ※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“5.-나.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”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
 - ※ 2014.3.7. 개정·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.3.1.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

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

- (금액 공개)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(시보·도보·군보·구보)에 공개
- (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)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

— <법제처 유권해석('02.5.31)> —

-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기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.

③ 『자치단체와 협력사업』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

-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
 -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. 또한,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
4. 금고의 지정절차

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

※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
-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평가함

가.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

-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

나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-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

다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
라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-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
- 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(과반수이상)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,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

- 위원장 및 위원 선정, 위촉 기간, 위원 수,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

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

-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,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④ 금고의 지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

5. 금고약정 및 해지

①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
-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-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 의무,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계약해지, 계약 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
② 금고약정의 해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

6. 보 칙

① 금고운용 보고

-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
-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
- 자치단체의 장은 상·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

② 조례 등 위임

-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

7. 부 칙

-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
-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
-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』(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, 2014. 12. 30)은 폐지함
- 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